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차별 우려 표현 정비〉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272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애인 차별 우려 표현 정비	3

I. 제안경위

2025년 4월 30일 최보운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차별 우려 표현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안전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1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 ③ (생략)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 ----- ----- -----.
<u>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 소관 2개의 법률에서는 상임이사 등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격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 법률안을 비롯한 2개의 법률안에서는 상임이사 등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 우려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임.

[표] 해양수산부 소관 개정안 주요내용

연번	법률명	소관부처	개정내용
1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사유에서 “ <u>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u> ”를 “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로 개정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비상임심판관 해촉사유에서 “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를 “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로 개정

- 참고로, 비상임심판관 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에 학식·경험을 가진 사람을 심판에 참여시켜 공명정대한 심판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상임심판관의 직무 및 권한은 해당 사건의 심판관과 동일하며,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비상임심판관 참여 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앙해심	인원	-	-	-	-	-
	참여횟수	-	-	-	-	-
부산해심	인원	-	-	-	-	-
	참여횟수	-	-	-	-	-
인천해심	인원	-	2	-	-	-
	참여횟수	-	6	-	-	-
목포해심	인원	-	-	2	2	2
	참여횟수	-	-	1	1	1
동해해심	인원	-	-	-	-	-
	참여횟수	-	-	-	-	-

- 개정안과 같이 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해촉 사유를 변경하면, 장애인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수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 다만, 개정안은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건으로 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생각되지만, 직무수행이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는 해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장애인 차별 우려 표현 정비 관련 우리 위원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는 바, 해당 법률안들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의견을 제시하여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 여부를 요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